

원산지확인서 수령으로 FTA특혜세율 적용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로 무산소 동판, 관, 봉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
- 주요 수출 품목 : 무산소 동판, 관, 봉(HS 제7409호, 제7411호 등)

2. FTA 활용전 상황

- 국내거래업체로부터 Brass Tube, Brass Rod 등을 공급받아 필요한 형태, 크기로 가공하여 수출
-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같아 C/O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어 FTA 혜택 없음

3. 장애 요인

-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불충족
-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FTA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, 납품업체의 무지 및 비협조로 어려움

4. 극복 방법

-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이 “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”이지만 국내 업체로부터 한국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
 - 해당 제품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(포괄)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-
- 납품업체의 원산지증빙서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세관 컨설팅을 토대로 원산지확인방법,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교육하고 설득함으로써 증빙서류 확보

5. FTA활용 효과

- 한·미 FTA 적용시 약 1.4~3% 관세 혜택 및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가능 (발효 전 75천불 → 89천불로 14% 증가)
- FTA 관세 혜택시 원가 절감으로 미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 예상

6. 시사점

-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